02 의료폐기물 분류 관련 질의응답 사례

의료폐기물 분류 관련 2-1



01 건강검진 폐기물 관련

일반 외래에 진료를 보고 소변검사를 위해 소변을 모은 종이컵은 의료폐기물인가요?
건강검진 중 폐기능 검사 시 사용되는 마우스피스도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지?
건강검진 목적으로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시 사용된 침이 묻은 방수포나 대변과 같은 분비물이 묻은 다이아패드는 의료폐기물로 봐야 하나요?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방문한 사람의 치과 구강검진시 사용되는 일회용 설압자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의료기관 등의 입원**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체액·분비물·배설물이 묻어 있는 것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나, **건강검진자**의 체액·분비물·배설물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의심 검진자로부터 발생되는 것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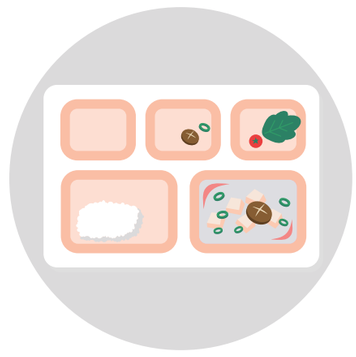
건강검진자의 체액·분비물·배설물이 묻어 있을 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02 격리의료 폐기물 관련

격리환자가 남긴 잔반 및 식기도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 감염병 환자에게서 나온 일회용품(식기류 등)은 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 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로서,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리환자가 사용한 식기와 잔반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격리환자에게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 등은 감염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소독, 멸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치를 하고 폐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 없을시
의료폐기물에 불포함

격리병실을 방문한 출입자가 입은 1회용 가운 등이 오염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 의료행위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며 감염의 우려가 없는 것은 격리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격리병실에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출입자가 입은 1회용 가운이 환자의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로 오염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격리병실에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출입자가 입은 1회용 가운
의료폐기물 불포함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02 의료폐기물 분류 관련 질의응답 사례

의료폐기물 분류 관련 2-2



03 링거병, 앰플병 및 바이알병 등 관련

환자에게 사용한 혈액 등과 접촉되지 않는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생활폐기물(재활용 폐기물)로 처리해도 되는지? 수액병이나 수액백을 폐기할 때 의료폐기물인지? 항생제, 항암제 등이 아닌 단순 비타민을 믹스한 수액백은 의료폐기물인지? 아미노산 제제 수액병은 어떻게 폐기해야 하는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2(의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와 혼합·접촉되지 않고, 혈액 등이 함유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폐기물이 아닌 경우 사업장폐기물(일반, 생활계)에 해당되며, 사업장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이므로 폐기물의 성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폐기물의 분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수액병 또는 수액백이 의료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업장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동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포장 용기도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라고 되어있던데 환자에게 드레싱을 하기위해 일회용 드레싱 세트에 포타딘, 알코올 등을 담고 환자에게 드레싱을 실시했을 경우 사용한 포타딘 솜이나 알코올 솜은 의료폐기물로 버리고 직접 접촉하지 않은 용기는 포타딘이 묻어있고 알코올이 묻어있어도 일반 폐기물에 버리면 되는건지?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이외의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용기에 의약품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발생량, 배출시설 유무 등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폐의약품") 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